

행정자치부

징계·시정 요구

제 목 의약품 구매 검사·납품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징계대상자 부산광역시 ○○○○과 ○○○○○ ○○○

징 계 종 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과 ○○○○○ ○○○

내 용

지방○○○○○ ○○○은 2016. 8. 2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
○실 업무를 총괄담당하면서 의무실에 필요한 약품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
방○○○○○ ○○○은 2016.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실
약품구매 건강상담 등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
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1호 가목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에서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구매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납품된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검사를 실시한 후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구매현황대로 납품 후에 대가지급을 하였어야 했다.

부산광역시(○○○○과)에서는 2016. 12. 7. ○○○○○ 대표 ○○○과 ○○○○ 등 21건의 의약품을 5,703천원으로 구매 계약하여 2016. 12. 13. ○○○○ 외 16건의 의약품은 납품 받았으나, ○○○○○ 등 5건은 유효기간 경과 우려 등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았으며, 2017. 1. 11. 위 계약상대자와 구매 계약한 ○○○○ 300병 등 9건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2017. 1. 13. ○○○○ 100병 등 일부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만 납품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납품을 받지 아니한 채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의약품 구매 및 납품현황

(단위 : 천원)

구매계약 현황			납품 현황			비 고
일 자	품 목	금 액	일 자	품 목	금 액	
2016.12.7	○○○○ 등 21건	5,703	2016.12.13	○○○○ 등 16건	4,808	보관증 (5건 895)
2017.1.11	○○○○ 등 9건	5,820	2017.1.13	○○○○ 등 5건(일부)	1,346	보관증 (9건 4,474)

위 관서(○○○○과) ○○○은 시청 ○○실에서 사용예정인 의약품구매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납품된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구매 현황대로 납품 후에 대가지급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불 후 (2016. 12. 13., 2017. 1. 13.) 1개월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 등 14건 (5,369천원)에 대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제품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는 등 부 적정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의약품 납품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관증으로 대처한 건은 없었으며, 또한 이번 정부합동감시 시 약품을 구매하여 처방하는 ○○○군 보건소 등 총 6개소를 약품 구매 실태를 부산광역시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과)에서는 2016. 12. 7.과 2017. 1. 11.에만 부당하게 보관증으로 대처하여 횡령 관련 의혹이 제기 되는 등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로서 성실하게 물품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방계약법」에 따라 ○○○○ 등 14건(5,369천원)에 대해 납품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